



상 표 법 [시행 2025. 7. 22] [법률 제20697호, 2025. 1. 21, 일부개정]	상 표 법 [시행 2025. 5. 27] [법률 제20965호, 2025. 5. 27, 일부개정]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“상표의 사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11. “상표의 사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가.나. (생 략)	가.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상품에 관한 광고·정가표(定價表)·거래서류,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	다.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
<신 설>	라. 상품에 관한 광고·정가표(定價表)·거래서류,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